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나21738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담당변호사 송재우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8. 19.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21. 선고 2019가단695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4.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7,3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2013. 9. 24. 확정된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소115695 신용카드이용대금)에 기한 판결금 채권(3,836,597원 및 그 중 3,777,257원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채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D는 2018. 10. 5.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2018. 4. 12.에 체결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판결금 채무 이외에도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연체액이 9,995,000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피고는 E, F와 함께 2018. 11. 9.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2.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거래가액이 71,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안산시 단원구 및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범위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D가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성립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또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므로 13,404,005원(= 3,836,597원 및 그 중 3,777,257원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1. 7. 15.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D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다툼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선결례의 태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소결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이전부터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2) 설령 피고가 D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을 증여의 형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3)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선의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선결례의 태도

가)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의 취지 참조).

나)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의 취지 참조).

2) 소결

가) D와 피고가 형제라는 점, 이 사건 D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일과 피고와 G 사이의 매매계약일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나)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취소의 대상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선결례의 태도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의 취지 참조).

2) 소결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에게 소유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선결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나. 구체적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법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지분의 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채권액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3,404,005원이다.

다)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018. 4. 12.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 71,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단 71,000,000원이라고 추인하기로 한다.

라)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지분의 가액은 17,750,000원(= 71,000,000원×1/4)이고, 원고의 채권액이 위 가액의 범위 안에 들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3,404,005원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37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7,375,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한, 판사 최희동, 판사 안철범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미추홀구 I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지하, 1, 2층 각 76.80㎡

3층 58.4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 미추홀구 I 대 16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J호 벽돌조 49.11㎡

(대지권의 표시)

1소유권대지권 169.2분의32.40 끝.

